

예천군 공고 제2016 - 519호

신평 농어촌마을 공공하수도 외 2건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

예천군『신평 농어촌마을 공공하수도 외 2건』을 추진함에 있어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최적의 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6월 20일

예 천 군



1. 공법선정 집행계획

가. 제 안 명 : 신평 농어촌마을 공공하수도 외 2건 하수처리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

나. 시행기관 : 예천군 환경관리과

다. 기술제안 대상시설

1) 신평 농어촌마을 공공하수도시설

- 위 치 :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신평리 일원
- 시설용량 : $Q=70\text{m}^3/\text{일}$

2) 오천 농어촌마을 공공하수도시설

- 위 치 :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일원
- 시설용량 : $Q=80\text{m}^3/\text{일}$

3) 우망 농어촌마을 공공하수도시설

· 위 치 :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우망리 일원

· 시설용량 : $Q=70\text{m}^3/\text{일}$

※ 대상시설 3건에 대하여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.

※ 시설용량은 실시설계 수행 시 변동이 될 수 있으며, 하수처리시설은 R.C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.

※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된 목표수질을 반드시 준수하여 기술 제안 하여야 함.

2. 참가자격

가. 공고일 기준 국내 하수처리공법 환경신기술 또는 특허권 보유업체로서 국내 공공 및 개인에 시설용량 $50\text{m}^3/\text{일}$ 이상 $500\text{m}^3/\text{일}$ 미만의 공공 및 개인 하·폐수처리시설에 정상 가동실적(공고일 최근 1년)이 있는 고도 처리 공법 보유업체로 특허권 등 처리공법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약이 없으며, 우리군과 기술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자 또는 업체로 한정함.

나. 신기술 또는 특허권 등 처리공법 권리에 대해 소송 중인 공법의 경우 기술제안서 제출이 불가하며, 제출된 경우 평가에서 통보 없이 제외 됩니다.

※ 정상가동 실적이 없는 환경신기술 검증을 받은 경우 제출한 운영 실적(6개월)을 정상가동 실적으로 인정

※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환경신기술 검증에 대하여 적용

3.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안내

가.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: 2016년 06월 27일(월) 10:00 ~ 18:00까지

나. 기술제안서 제출일 : 2016년 07월 08일(금) 10:00 ~ 18:00까지

다. 제출서류 : 기술제안서 13부(USB 1식) 원본1부, 사본12부

(사본의 세부내용은 원본과 동일하여야 하며 모두 제안사명 표기)

라.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: 예천군 환경관리과 방문제출(우편접수 불가)

마. 기타사항은 ‘기술제안서 작성지침’ 참고

바. 제출서류

-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(회사공문)
- 업체 대표자의 위임장(재직증명서 포함)
- 법인 인감(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), 인감증명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
4.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

- 가. 금회 선정된 공법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며,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또한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.
- 나. 기술제안 참가등록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또는 기술제안 작성지침 내용에 1개 업체만 적정할 경우 평가취소 및 재공고합니다.
- 다. 우리군에서 기관평가(경제성분야 등) 후, 평가 결과 상위 5개 업체에 대해서만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평가(기술분야)를 하며, 최종평가는 기관평가 및 위원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1개 업체를 선정합니다.
- 라.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분야의 고득점자로 결정하고 기술분야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최저가 공사비, 유지관리비 순위로 결정하며, 최저가 공사비도 동일할 경우 수질관리의 적정성 중 보증수질의 적정성, 부하변동의 대응성, 수질확보의 안정성 순서대로 결정합니다.
- 마. 금회 공고한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계획시설용량의 변동 시에도 금회 제출한 기술제안서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바. 공법으로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,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증액부분 발생 시에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사. 시설 완공 후 정상운전 단계에서 제안한 운영비(약품비, 전기료 등) 보다 실제 운영비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용에 대해 자재성능 보증

연한 동안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
- 아. 공법선정 이후 선정된 공법 보유업체는 우리군과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을 우리군이 원하는 시기에 체결하여야 하며, 미체결 시 선정 취소와 함께 차순위 업체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.
- 자. 공법선정 업무는 모두 비공개로 추진되며, 공법보유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.
- 차. 본 공법선정과정을 통해 선정된 공법이 향후 가동 시 제시된 보증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방류되는 경우 기술제안업체에 시설개선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보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카. 공고 및 기술제안서에 관하여 발생하는 이견은 우리군의 해석을 따릅니다.
- 타. 기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문의사항은 예천군 환경관리과 하수도담당 (☎ 054-650-637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파. 공고 제안서 제출공법사는 2차 심사당일 프리젠테이션을 활용 10분 이내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며, 설명내용 및 순서는 기술제안서 제출 순서에 의해서 제한시간 내에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.

- 붙임 1.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부.
2.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. 끝.